#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2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임호선・이학영・권칠승

최기상 · 강경숙 · 복기왕

이병진 · 송옥주 · 윤준병

주철현 · 이원택 · 송재봉

강준현 · 서삼석 · 이연희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 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푸드테크"란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또는 생명공학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 9.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이용하는 식품산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푸드테크산업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 2.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4.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5. 푸드테크산업 해외진출 지원
  - 6. 푸드테크산업 특화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푸드테크"란 식품산업에 정
	보통신기술 또는 생명공학기
	술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
	<u>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u>
	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u>&lt;신 설&gt;</u>	9.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
	크를 이용하는 식품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u>을 말한다.</u>
<u>&lt;신 설&gt;</u>	제12조의3(푸드테크산업의 지원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u>정책・제도의 조사・연구</u>
	2.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u>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u>

-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 성
- 4.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u>실</u> 용화
- 5. 푸드테크산업 해외진출 지원
- 6. 푸드테크산업 특화 식품전문 산업단지의 조성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